

- 2026년 하반기 도시청결 기동대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2026년 하반기 도시청결 기동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채용분야, 인원 및 근무내용

분 야	인원	근무기간 및 시간	근 무 내 용
도심 환경정비	111명	· 기간 : '26.7.6. ~ '26.12.31. · 시간 : 10:00 ~ 17:00(6시간/일)	· 55개 읍·면·동 청소 취약지역 환경정비 · 이면도로 청소 및 제초작업 등

- **(희망 근무장소)** 지원자는 희망 근무장소 2개소(1지망, 2지망)를 반드시 선택할 것.
- **(1지망 합격자 선발)** 각 읍·면·동별 1지망 지원자 중 면접점수(가산점 별도) 총점 300점 중 21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함.
- **(1지망 최고점수가 210점 미만, 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지망 지원자 중 21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함.
- **(1지망, 2지망 모두 지원자가 없을 경우)** 희망 근무장소 1지망, 2지망에서 탈락한 자 중 21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확인하여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분류)**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21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다수 시민의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최근 1년간('25.7.1~'26.6.30.) 울산광역시청 또는 소속 사업소에 채용되어 근무한 자는 응시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6.5.26.(화) ~ 5.28.(목) 10:00 ~ 17:30	시의회 회의실(의사당 3층)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6.9.(화) 예정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면접시험	'26.6.15.(월) ~ 6.17.(수)	시의회 회의실(의사당 3층)	
최종 합격자 발표	'26.6.19.(금) 예정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채용일정과 면접장소는 접수인원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55세 이상(1971. 6. 30.이전 출생)
- 성 별 : 제한없음 ※ 남성인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다수 시민의 채용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최근 1년간('25.7.1~'26.6.30.) 울산광역시청 또는 소속 사업소에 채용되어 근무한 자는 응시 불가
- 「울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가점 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점항목	가점 부여 내용
법정가점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면접전형 단계에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점항목	가점 부여 내용
사회형평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원자에게 면접전형 단계에 만점의 3%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울산보훈지청에 확인하기 바람

4. 근무조건

□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7. 6. ~ 12. 31.(6개월 정도)

나.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공휴일 휴무)

다. 근무시간 : 10:00 ~ 17:00(1일 6시간)

라. 근무장소 : 55개 읍·면·동 등

※ 읍·면·동에 배치시 1지망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할 예정임

마.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울산광역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등 적용

□ 보 수

가. 기본급 : 기본급 단가(64,080원/일) × 근로일수

※ 울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외근직종 적용 지급

나. 수 당 : 가족수당, 연차수당(만근 시), 휴일수당 지급

※ 휴일수당 : 토요일 3시간, 일·공휴일 6시간 지급, 우천시 무급 휴무

다. 기 타 : 교통비, 급량비는 실 근무일 5,000원/일 각각 지급

5. 채용방법

① 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거주지, 나이 조건 등)

② 면접전형

-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정요소*에 따라 점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

*평정요소

- | | |
|-------------------|---------------|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③ 합격자 결정

가. (희망 근무장소) 지원자는 2개소(1지망, 2지망)를 반드시 선택하여 지원할 것

나. (1지망 합격자 선발) 각 읍면동별 1지망 지원자 중 면접점수(가산점 별도) 총점 300점 중 21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함.

다. (1지망 최고점수 210점 미만 또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지망 지원자 중 21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함.

라. (1지망, 2지망 지원자가 없을 경우) 희망 근무장소 1지망, 2지망에서 탈락한 자 중 21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확인하여 합격자 결정

마. (예비합격자 분류)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21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바.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울산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채용 전 일반병원, 의원,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채용신체검사서 (26.1.1.이후 발급)를 제출(「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검진 대상연도(2026년)의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채용신체검사서 종합 소견란에 정상, 적합, 양호 등으로 표시되지 않고 근로 부적합 의견시 합격 취소됨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26.(화) ~ 5. 28.(목), 10:00 ~ 17:3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처 : 시 의회 회의실(의사당 3층)

□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①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응시자 주민번호(가족사항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지역 최근 3년간) 1부

- 가점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법정가점(취업지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사회형평	① 장 애 인 :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② 최종 합격자

- 일반병원, 의원,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채용신체검사서('26.1.1. 이후 발급)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검진 대상연도(2026년)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8. 응시자 유의사항

① 채용서류 반환 관련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나.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반환 청구기간)에 <별지 서식 9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 다. 청구하지 않은 서류는 반환청구 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② 주요 유의사항

- 가.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나. 다수 시민의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최근 1년간('25.7.1~'26.6.30.) 울산광역시청 또는 소속 사업소에 채용되어 근무한 자는 응시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자는 서류접수 및 면접시험 응시시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미지참시 응시 불가)
- *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국가보훈등록증
- 마. 지정 면접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합격자 결정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 합격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서식 8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채용예정자는 채용건강진단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 제출서류는 각각 1면으로 인쇄하여, 순서대로 정리 후 반드시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양면인쇄, 2쪽 모아짜기,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차.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카.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052-229-3223
------	--------------------------------

【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명	성별	희망 근무장소(읍면동)*		응시분야
		1지망	2지망	
				도심 환경정비

※ 희망 근무장소는 55개 읍·면·동 중에서 선택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목 록	제출여부
필수	1. 제출서류 목록표<서식1>	
	2. 응시원서<서식2>	
	3.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 채용지원서<서식3>	
	4. 자기소개서<서식4>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6.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서식6>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7>	
	8.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응시자 주민번호 표시(가족사항 포함)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지역:최근 3년간) 1부	
해당자	1.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가. 법정가점(취업지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나.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표시하고, 위 순서대로 제출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서

채용분야	도심 환경정비	희망 근무장소	1지망	2지망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이메일						
군필여부				면제사유		
가점 사항 여부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직무 관련 경력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자격 면 허	자격증명	자격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본 신청서는 도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기간제근로자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26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울산광역시시장 귀하

【서식 4】

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A4 1장 이내)
- 본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직무 수행 시 포부 등 작성

2026. . . 작 성 자 : (서명)

- ※ 가급적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연번	내 용	해당유·무(○표)	
		유	무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